

<2020년도 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안내>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8조 및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건설폐기물법)」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실적보고 작성 대상자는 **2020년도 실적보고서**를 해당 허가·승인·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, 건설폐기물 처리업자(수집·운반업자, 중간처리업자)는 건설폐기물 관련 5종 실적보고서를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(올바로시스템)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의무화('07.1.9)되어 있습니다.

또한,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(올바로시스템 공지사항 1575번 참조)

따라서, 제출기한(2021.2.28.)까지 2020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실적보고 작성대상		제출 보고서
일반 · 지정	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자		-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-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
	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		-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
	폐기물처리업자	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	- 폐기물 수집·운반 실적보고서
		폐기물 중간처분업자	-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
		폐기물 최종처분업자	-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
		폐기물 종합처분업자	- 폐기물 수집·운반 실적보고서 -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-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
		폐기물 재활용업자	-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
건설	폐기물처리 신고자		-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
	배출신고자		-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-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
	처리업자	중간처리업자	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
		수집·운반업자	- 순환골재 생산·판매 실적보고서 -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 실적보고서

-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함
(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)
-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함

※ 실적보고 미제출 시,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 바람)